

# 결 정

- 의 결 번 호 2024년 하반기 재보선-자심8
- 언 론 사 뉴스엔티브이 주식회사(뉴스엔티브이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69 4층  
대표이사 김 현
- 심의대상기사 뉴스엔티브이 주식회사 2024년 9월 23일자 01면 「뉴스엔티브이 의뢰 영광군수 재선거 여론조사…③」 제하의 기사
-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위 언론사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전라남도 영광군수)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부제 및 본문에서 예비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 관 련 규 정

##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 결 정

- 의 결 번 호 2024년 하반기 재보선-자심9
- 언 론 사 주식회사 뉴스1(뉴스1코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 SC빌딩 17층)  
대표이사 이영섭
- 심의대상기사 뉴스1코리아 2024년 9월 24일자 전국면 「영광군수는 누구? 민주 장세일, 조국당 장현보다 6.6%p 앞서」 제하의 기사
-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위 언론사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전라남도 영광군수)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 및 본문에서 예비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 관 련 규 정

##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 결 정

- 의 결 번 호 2024년 하반기 재보선-자심10
- 언 론 사 주식회사 어바웃영광(어바웃영광)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149 1층  
대표이사 장동현
- 심의대상기사 어바웃영광 9월 23일자 03면 「민주당 장세일 후보, 여론조사 39.3%로  
오차범위 밖 선두」 제하의 기사
-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이 유 위 언론사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전라남도 영광군수)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 및 본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해설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 관 련 규 정

##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 결 정

- 의 결 번 호 2024년 하반기 재보선-자심11
- 언 론 사 주식회사 투데이영광(투데이영광)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263-5  
대표이사 강동석
- 심의대상기사 투데이영광 2024년 9월 24일자 05면 「민주당 장세일 후보, 여론조사 39.3%로 오차범위 밖 선두」 제하의 기사
-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이 유 위 언론사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전라남도 영광군수)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 및 본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해설한 기사를 전재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 관 련 규 정

##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 결 정

- 의 결 번 호 2024년 하반기 재보선-자심12
- 언 론 사 주식회사 엔에스피뉴스통신사(NSP통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50 금산빌딩 3층  
대표이사 김정태
- 심의대상기사 1. NSP통신 2024년 9월 11일자 전국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장 수여」 제하의 기사  
2. NSP통신 2024년 9월 13일자 전국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추석 연휴 ‘골든타임’ 잡는다」 제하의 기사  
3. NSP통신 2024년 9월 19일자 전국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한빛원전 실향민 망향제 참석해 실향민 위로」 제하의 기사  
4. NSP통신 2024년 9월 19일자 전국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합창단 기부행위 관련한 진정 사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5. NSP통신 2024년 9월 25일자 전국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대위 출범」 제하의 기사
-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엔에스피뉴스통신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NSP통신 홈페이지(<https://www.nspna.com/>) 초기화면 <#해명/반론> 코너에 24시간 동안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의 제목**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을 고정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심의대상기사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이 유 위 언론사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전라남도 영광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소식과 동향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보도한 반면, 동일 선거구 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다루지 않음으로써 예비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 관 련 규 정

##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 뉴스통신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전라남도 영광군수)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장세일)에 대한 소식과 동향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2024년 9월 11일자 전국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장 수여」 등 5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 결 정

- 의 결 번 호 2024년 하반기 재보선-자심13
- 언 론 사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아시아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오피스텔) 1505호  
대표이사 장창희
- 심의대상기사
1. 아시아뉴스통신 2024년 9월 2일자 사회면 「한연희 강화군수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제하의 기사
  2. 아시아뉴스통신 2024년 9월 11일자 사회면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공천장 수여식 개최」 제하의 기사
  3. 아시아뉴스통신 2024년 9월 13일자 사회면 「한연희 강화군수 예비후보 송해면 찾아」 제하의 기사
  4. 아시아뉴스통신 2024년 9월 13일자 사회면 「한연희 강화군수 예비후보, 강화군 국제말산업클러스터(말산업특구지정) 조성 공약 발표」 제하의 기사
  5. 아시아뉴스통신 2024년 9월 19일자 사회면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군민공약프로젝트’ 군민들에게 공약을 접수 받는다」 제하의 기사
  6. 아시아뉴스통신 2024년 9월 20일자 사회면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군민공약프로젝트’ 군민 제안 호응 뜨겁다」 제하의 기사
  7. 아시아뉴스통신 2024년 9월 21일자 사회면 「김병주 국회의원, 한연희 후보와 정책협약 맺어」 제하의 기사
  8. 아시아뉴스통신 2024년 9월 23일자 사회면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여기구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정책협약식 가져」 제하의 기사
  9. 아시아뉴스통신 2024년 9월 25일자 포토면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26일 오후 2시 사무소 개소식」 제하의 사진 기사
  10. 아시아뉴스통신 2024년 9월 26일자 사회면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제하의 기사
  11. 아시아뉴스통신 2024년 9월 27일자 사회면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과 강화군 현안 정책협약 맺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인천광역시 강화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홍보 이미지를 그대로 게재하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에 대해 반복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해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 관 련 규 정

##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